

「2025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2025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23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5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 신청가능 생년월일: 1985. 1. 1 ~ 2006. 12. 31
 -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매월 20만원, 12개월 월세 지원 ※ 생애 1회
 - * 월세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만 지급
 - 예시) 월세 15만원 ⇒ 월 15만원 지원 / 관리비 등 제외하고 월세만 지원
 - ** 지급일은 매월 25일(예산 사정, 휴일 등에 따라 변동)
- 지원방법 : 매월 본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첫 지급: 10월 예정)
 -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2

사업 신청

☐ 신청 개요

- 공 고 일 : 2025. 7. 23.(수)
- 접수기간 : 2025. 7. 28.(월) 09:00 ~ 8. 14.(목) 18:00
- 선정인원 : 3,000명
- 신청방법 : 대전청년포털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https://djhousing.or.kr>)
- 신 청 자 : 청년 본인 / 부모 등 대리신청 불가
- 선정발표 : 2025. 9. 30.(화) 17:00 예정

※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확인

☐ 신청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 소)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에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자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연 령) 생년월일이 1985. 1. 1. ~ 2006. 12. 31. 사이인 자
- (거 주)
 - 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는 자
 - ②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전월세 환산액이 80만원 이하인 자
 - ※ 전월세 환산액 = 월세 + (임차보증금×5.0%÷12개월)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3.0% + 대통령령이 정한 2.0%

예시)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70만원인 경우,

→ 전월세 환산액 = 70만원 + (2천만원 × 5.0% ÷ 12개월) = 783,333원 (80만원 이하로 신청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하나, 월세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예시: 1년 월세 1회 선납(연세)

- 계약서 1건 당 1명만 신청 가능

※ 단,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 인정

※ 임대차계약서 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 월세 80만원

⇒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

○ (소 득)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인의 2025년 **6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심사

※ 각 세대원 또는 부부가 건강보험 별도 가입 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원/월)

구분	가구원수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3,589,000	127,230	58,386	-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임차주택 금액 초과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市)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개인 거래 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전시 주거지원 사업 중복 지원 사항 〉

사업명	동시지원*	순차지원**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X	X
타 사·도 및 대전 청년 월세지원	X	X
대전 청년·청년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X	O
대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X	O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X	O
버팀목/디딤돌 대출	X	O
주거급여	X	O
대전도시공사 임대·매입주택	X	O
LH 임대·매입주택***	X	O

※ 기타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

* 동시지원 불가: 현재 지원받고 있는 중이면 지원 불가 / 현재 신청 중 포함

** 순차지원 불가: 과거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민간임대 주택은 가능

☐ 대상자 선정기준

○ 선정인원 : 3,000명

○ 선정방법 : 소득 기준 점수(60점) + 임차료 기준 점수(40점) 적용,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동점일 경우 소득 낮은 순 → 연장자 순)

- (소득 산정기준) '25년 6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임차료 산정기준)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5.0%÷12개월) + 월세

☐ 제출 서류

○ 제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5. 7. 23.) 이후의 발급분만 인정

- 미리보기 및 열람용이 아닌 정식 발급본(출력본) PDF 파일만 인정

※ 미리보기 및 열람용 파일 등은 법적 효력 없음

- 암호(보안) 해제 후 제출 필수

※ 제출 후 서류 확인 및 수정 불가, 추후 보완 예정/ 9.3.(수) 09:00 ~ 9.5.(금) 18:00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① 지원 신청서	• 온라인 신청	○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 사업 홈페이지 (https://djhousing.or.kr)						
② 개인정보동의서 (해당 시)	• 신청자 제외 등본 상 세대원 있는 경우 세대원 서명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첨부 칸에 등본과 병합하여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 관계, 세대원, 전입일 등 모든 내용 표시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 표시	○ 정부24(www.gov.kr) ○ 네이버앱 등 인터넷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자 본인 기준 '상세'로 발급 -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 기준 추가 제출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 표시	○ 정부24(www.gov.kr) ○ 네이버앱, 카카오톡의 전자증명서						
⑤ 무주택 약약서	• 신청자 본인 기준 • 등본 상 세대원 있는 경우 세대원 기준 추가 제출	○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 사업 홈페이지(서식 작성) (https://djhousing.or.kr)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자 본인 기준 '전체' 이력(출생~최근까지)	○ 정부24(www.gov.kr) ○ 네이버앱, 카카오톡의 전자증명서						
⑦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 관련 제출 서류 - 등본 상 세대원 있는 경우 세대원 기준 추가 제출 <table><tr><th>*본인이 납부자(부양자)인 미혼 청년</th><th>**본인이 피부양자인 미혼 청년</th><th>기혼 청년</th></tr><tr><td>본인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td><td>본인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납부자(부양자) 기준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td><td>본인, 배우자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td></tr></table>		*본인이 납부자(부양자)인 미혼 청년	**본인이 피부양자인 미혼 청년	기혼 청년	본인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본인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납부자(부양자) 기준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본인, 배우자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본인이 납부자(부양자)인 미혼 청년	**본인이 피부양자인 미혼 청년		기혼 청년					
본인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본인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납부자(부양자) 기준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본인, 배우자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5년 6월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 ※ 해당월 보험료가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내역서* 추가 제출							
⑨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임대인·임차인 서명(인), 임대인 계좌번호 포함 필수) •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u>확정일자</u>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FAQ 참고 (기숙사생) • 거주 사실 확인서(입실 확인서) • 생활관비 납입 증명서							

※ 건강보험 관련 제출 대상

-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피부양자)
 - * 본인 기준 : 자격득실확인서
 - * 납부자(부양자) 기준 :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 본인이 결혼했고, 배우자(부인 또는 남편)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는 경우
 - * 본인 기준 :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 * 배우자 기준 :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3

선정자 이행사항

□ 지원금 지급 신청 (매월)

○ 지원절차 : 임차료 선(先) 납부 → 지원금 지급 신청(매월 1일 ~ 10일)

→ 납부내역 확인 → 지원금 입금 (매월 25일)

※ '25년 10월에 한해 지급신청 기간은 10월 1일 ~ 10월 16일 / 지급일 10월 31일

※ 지급일자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지급신청 일정

선정자 이행사항	신청기간	지급일
'25. 8,9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5. 10. 1. ~ 10. 16.	2025. 10. 31.
'25. 10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5. 11. 1. ~ 11. 10.	매월 25일
'25. 11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5. 12. 1. ~ 12. 10.	
'25. 12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6. 1. 1. ~ 1. 10.	
'26. 1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6. 2. 1. ~ 2. 10.	
기한 내 미신청한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25.8월~'26.1월분)	2026. 2. 20. ~ 2. 25.	2026. 3. 13.
'26. 2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6. 3. 1. ~ 3. 10.	매월 25일
'26. 3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6. 4. 1. ~ 4. 10.	
'26. 4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6. 5. 1. ~ 5. 10.	
'26. 5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6. 6. 1. ~ 6. 10.	
'26. 6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6. 7. 1. ~ 7. 10.	
'26. 7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6. 8. 1. ~ 8. 10.	2026. 9. 11.
기한 내 미신청한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26.2월~'26.7월분)	2026. 8. 20. ~ 8. 25.	

※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 별도 지급신청 필수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지급 신청	① 지급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대전 청년 전·월세지원 사업 홈페이지 (https://djhousing.or.kr) ○ 해당 은행 지점 및 홈페이지(어플) ※ 발급 기관에 문의 요망
	②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 아래 내용 모두 포함하여 발급 1) 보내는 사람* 2) 받는 사람 3) 보내는 계좌 4) 받는 계좌 5) 납부금액 6) 납부일자 * 신규신청 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가능한 이체자(부모, 배우자)만 예외적 인정 ※ 단순 거래내역조회 불가	
	③ 통장 사본	• 청년 본인 명의 • 지급신청서 작성 시 기재하는 계좌의 통장 사본 ※ 압류계좌 및 적금 계좌 불가 • 1회만 제출 / 변경시만 추가 제출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추가 제출

- ❶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크레딧포유 발급분만 인정
* 신용불량 여부는 시중은행의 신용점수 기준에 따름
- ❷ 친족* 통장 사본 /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❸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❹ 대리수령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변경 및 중지 신청

○ 변경신청

- 관내 주소 이전,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변경신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변경 신청	① 변경 신청서(필수)	• 온라인 작성 • 사유 발생 시 변경 신청 후 지급 신청 필수 (지급 신청 우선시 변경 신청 불가)	○ 대전 청년 전·월세지원 사업 홈페이지 (https://djhousing.or.kr)
	② 확정일자 날인된 새 임대차계약서(필수)	• 변경 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임대인 서명(인), 임대인 계좌번호 포함 필수	
	③ 주민등록등본(필수)	• 해당 주소지 전입신고 상태 확인	○ 정부24(www.gov.kr) ○ 네이버앱,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 이외의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ex) 임대인 변경: 해당 주소지 등기부등본 추가 첨부		

○ 중지신청

-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중지신청

※ 지원 중지 사유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계약 내용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등 포함)하게 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市)로부터 주거 지원 또는 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개인 거래 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지원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지 신청 시 재개 불가 및 익월부터 지원금 지급 중지

4

기타 유의사항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FAQ(자주 묻는 질문)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 후 제출한 서류 및 정보 수정은 불가하며, 신청자의 허위·착오,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받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031~8033)으로 문의 바랍니다.